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조치(2)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법학박사)

정진우

1 | 안전검사

가. 취지 및 개요

안전검사제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사용과정에서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행하도록 하여 당해 기계 등의 안전성능의 유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일정한 규격, 방호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구비하지 않으면 양도,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함으로써,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용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행하는 제도이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만,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법제36조 제1항).

나. 안전검사의 대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은 산업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²⁾

- ① 프레스 ② 전단기
- ③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및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⑥ 곤돌라
- ⑦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⑧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⑨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⑩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⑪ 롤러기(밀폐용 구조는 제외한다)
- ⑫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톤(KN) 미만은 제외

다. 안전검사의 면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광산보안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2항, 시행규칙 제73조).

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1회/2년)를 받은 타워크레인의 경우 해당 주기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고 나머지 산안법상의 검사 시기(1회/6월)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73조 제6호).

라. 안전검사 합격표지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유해·위험기계 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3항). 이는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검사 수검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기계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주기 위함이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3조의2 제3항).

마. 안전검사의 신청 및 절차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해당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주기(시행규칙 제73조의3) 만료일 30일전에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안전검사기관³⁾)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3조의2 제1항).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3조의2 제2항).

바. 안전검사의 검사주기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주기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종류, 사용연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법 제36조 제9항). 이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73조의3).

- ①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 ②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① 프레스	2년	⑦ 곤돌라	건설현장 6개월, 제조업 등 2년
② 전단기	2년	⑧ 국소배기장치	2년
③ 크레인	건설현장 6개월, 제조업 등 2년	⑨ 원심기	2년
④ 리프트	건설현장 6개월, 제조업 등 2년	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2년
⑤ 압력용기	2년(PSM제출 확인시 4년)	⑪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2년
⑥ 롤러기	2년	⑫ 사출성형기	2년

사. 미검사품·불합격품의 사용금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과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6조 제3항).

아. 위반에 대한 조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위반)에는, 즉시 사용중지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2항 위반)에는, 즉시 사용중지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 제3항 위반)에는, 즉시 사용중지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로, 사업주의 안전검사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고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가. 의의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안전검사에 준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36조의2 제1항).

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수행방법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면, ①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검사원⁹⁾을 고용하여 안전검사를 수행하거나(법 제36조의2 제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법 제36조의2 제3항).

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사업주가 산안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시행규칙 제74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⁹⁾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 ③ 안전검사 검사주기(시행규칙 제73조의3)의 1/2에 해당하는 주기(다만, 시행령 제28조의3 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 ④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자율검사프로그램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인정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법 제36조의2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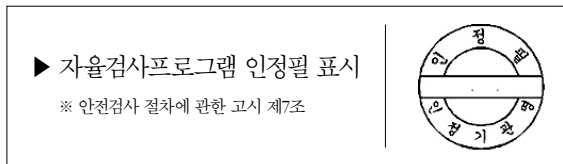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원 및 장비 요건(시행규칙 제74조의2 제1호 및 제2호)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

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신청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⁹⁾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4조의2 제2항).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은 제출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15일 이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시행규칙 제74조의2 제4항), 이를 인정하는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⁷⁾와 인정증명을 날인한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4조의2 제5항).



마.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법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36조의2 제2항, 제64조 제2항).

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법 제36조의2 제4항).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법 제36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지정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⁸⁾를 갖추어야 한다(시행규칙 제75조).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⁹⁾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지정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계·기구별 검사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등 자체검사 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6조의2).

지정검사기관이 시행규칙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6조의2 제7항 및 시행령 제28조의4).

아. 위반에 대한 조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 제5항 위반)에는, 즉시 사용중지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의2 제2항, 제64조 제2항 위반)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로, 사업주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만 있고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

주석

1. 안전검사 고시.
2.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3.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단·비영리법인·관계 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은 산업법 제6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4. 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
5.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6.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제13호.
7.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제13호의2.
8.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10.
9.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4호 서식.